##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7

발의연월일: 2025. 2. 14.

발 의 자: 송재봉・박해철・강득구

허성무 • 서영교 • 임호선

민병덕 · 김남근 · 이수진

황명선 · 김우영 · 김남희

박정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나이·수학능력·출생지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이 통일부, 교육부, 여성 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실시되고 있어 정책이 유기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학교에 대한 운영 경비지원이 통일부장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져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여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 · 조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

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안제6조제1항제3호의4 신설 및 제24조제2항).

#### 법률 제 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
착지원협의회) ① 북한이탈주	착지원협의회) ①
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	
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	
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	
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의4.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
	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지원) ① (생 략)	제24조(교육지원) ① (현행과 같
	<u>수</u> )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2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계
	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
	<u>할 수 있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